

의안번호	2207392
의 퇴 인	김소희의원
회 답 일	2025.5.15.
추계번호	25B0196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2조의2 (기금의 평가)	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72조의2 (기금의 평가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기후대응기금사업 성과평가 (안 제72조의2)

-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,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금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- 다만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성과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가정하여 기후대응기금사업의 성과평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 제22조제3항¹⁾ 및 동법 시

1) 제22조(복권기금의 운용·관리 및 평가)

③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(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사업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. 이하 “복권기금사업”이라 한다)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.

행령 제15조의2제4항²⁾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성과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,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2025년도 예산은 6,500만원임³⁾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

2) 제15조의2(복권기금사업의 평가)

④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.

1. 경제·재정·행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
2.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경제·재정·행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3.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, 변호사 및 경제·재정·행정 업무 관련 전문가
4.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3)기금 관리비(3578-201)